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A1BL) 조합원 자격상실세대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송도국제도시 A1블록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만 당첨자 세대방문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당첨 세대 관람 및 분양사무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방문예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배우자, 당첨자 직계존·비속) 1인만 입장 가능)
 - 분양사무실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방문자 QR코드 확인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세대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 상담전화(☎ 032-859-0190)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 및 통화량이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해당 당첨 세대를 관람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 당첨세대 관람방문 및 정당계약일정 안내사항

1. 당첨자 서류 접수 방법 및 일정

서류접수 일정	03월 03일(수) ~ 05일(금)	* 보내실 곳
접수 방법	빠른 등기 우편 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송도마리나베이 단지내유치원(106동 옆위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접수방법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 2021년 03월 05일(수)까지(우편소인날짜 기준) 우편 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확인 중 미비서류가 있을 시 개별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제출서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를 통해 공지하며, 별도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첨자 당첨세대 관람 방문 및 정당계약 일정

당첨세대 관람	03월 10일(수) ~ 13일(토) / 오전 10시 ~ 오후4시	*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사전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예정
정당 계약일	03월 15일(월) ~ 17일(수) / 오전 10시 ~ 오후4시	

- ※ 당첨자 당첨세대 관람은 해당일 외 방문이 불가하오니, 필히 방문하시어 해당 세대별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방문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공급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아파트이며, 시행자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 승인일(2020.07.13.) 완료 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의 분양이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 후 2021.04.05.(월)부터 입주 가능한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아파트입니다.
- 이 주택은 시행자인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이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신탁부동산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부동산담보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사인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이고, 아시아신탁(주)은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9세대를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하는 단지로, 금번 공고에 모집하지 않은 세대(72세대)는 추후 별도 공고 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회차 공급예정인 72세대는 향후 입주자 모집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세대 개방일에 현장에 방문하여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 기간 내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상실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현재 상태로 공급하므로, balconi 비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추가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등 대출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당첨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6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09.(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구 분	주택소유 여부	비 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세대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이상	세대주, 세대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 당첨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2.09.(화)**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 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거주 인정 기준

-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 ②)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합니다.
 -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적용사례

-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나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제2호에 의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은 5년으로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 제5호가목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 공급대상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경제자유구역,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대상 당첨세대 개방	계약체결
일 정	02월 19일(금)	02월 22일(월)	02월 23일(화)	03월 02일(화)	03월 03일(수) ~ 03월 05일(금)	03월 10일(수) ~ 03월 13일(토)	03월 15일(월) ~ 03월 17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우편등기접수 (빠른등기)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 (10:00~16:00)	방문접수(10:00~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분양사무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분양사무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당첨자 세대 개방은 당사 분양사무실 집합 후, 각 세대별 방문 예정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1425호(2021.01.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A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38층 25개동 총 3,1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조합원 자격상실세대 189세대 중 일반공급 117세대
 [특별공급 46세대(일반[기관추천] 7세대, 경제자유구역 7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19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 2회차 공급안내 : 금번 공고에 모집하지 않은 72세대는 추후 별도 모집공고 후 모집할 예정이며, 향후 입주자모집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시기 : 잔금 완납 후, 2021.04.05.(월)부터 입주 가능(잔금납부기한은 2021.06.14.(월)까지임)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029	01	074.8994A	74A	74.8994	24.6258	99.5252	38.6444	138.1696	51.6247	3	-	-	-	-	-	-	-	3
		02	074.9894B	74B	74.9894	24.2834	99.2728	38.6908	137.9635	51.6868	18	1	1	1	3	-	1	7	11
		03	084.9738A	84A	84.9738	27.1040	112.0778	43.8422	155.9200	58.5686	34	3	3	3	6	1	2	18	16
		04	084.9160B	84B	84.9160	26.7441	111.6601	43.8124	155.4725	58.5287	18	1	1	1	3	-	1	7	11
		05	084.9766C	84C	84.9766	26.7258	111.7024	43.8436	155.5460	58.5705	10	1	1	1	2	-	-	5	5
		06	084.2262D	84D	84.2262	27.2773	111.5035	43.4564	154.9599	58.0533	9	-	-	-	1	-	-	1	8
		07	084.2020E	84E	84.2020	27.7446	111.9466	43.4440	155.3906	58.0366	16	1	1	1	3	-	1	7	9
		08	084.4546F	84F	84.4546	27.8407	112.2953	43.5743	155.8696	58.2107	7	-	-	-	1	-	-	1	6
		09	084.7583G	84G	84.7583	27.2006	111.9589	43.7310	155.6899	58.4200	2	-	-	-	-	-	-	-	2
합 계											117	7	7	7	19	1	5	46	71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공동주택(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금번 공고 공급물량인 117세대 기준으로 배정하였으며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해당동·호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06.14.까지
074.8994A	74A	3	101,104동 3호 라인	5~9층	1	224,458,000	393,542,000	618,000,000	61,800,000	556,200,000
				30층이상	2	224,458,000	427,542,000	652,000,000	65,200,000	586,800,000
074.9894B	74B	18	101~104동, 125동 1,2호라인	5~9층	1	226,520,000	393,480,000	620,000,000	62,000,000	558,000,000
				10~19층	6	226,520,000	406,480,000	633,000,000	63,300,000	569,700,000
				20~29층	8	226,520,000	413,480,000	640,000,000	64,000,000	576,000,000
				30층이상	3	226,520,000	426,480,000	653,000,000	65,300,000	587,700,000
084.9738A	84A	23	112~117동, 120~123동 1호라인	4층	1	261,581,000	456,419,000	718,000,000	71,800,000	646,200,000
				5~9층	3	261,581,000	475,419,000	737,000,000	73,700,000	663,300,000
				10~19층	5	261,581,000	490,419,000	752,000,000	75,200,000	676,800,000
				20~29층	13	261,581,000	497,419,000	759,000,000	75,900,000	683,100,000
		11	112~117동, 120~123동 4호라인	30층이상	1	261,581,000	512,419,000	774,000,000	77,400,000	696,600,000
				4층	1	261,581,000	472,419,000	734,000,000	73,400,000	660,600,000
				5~9층	1	261,581,000	491,419,000	753,000,000	75,300,000	677,700,000
				10~19층	3	261,581,000	505,419,000	767,000,000	76,700,000	690,300,000
084.9160B	84B	12	112~117동, 120~123동 2호라인	20~29층	6	261,581,000	513,419,000	775,000,000	77,500,000	697,500,000
				4층	1	255,527,000	451,473,000	707,000,000	70,700,000	636,300,000
				5~9층	3	255,527,000	470,473,000	726,000,000	72,600,000	653,400,000
				10~19층	1	255,527,000	485,473,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6	112~117동, 120~123동 3호라인	20~29층	4	255,527,000	492,473,000	748,000,000	74,800,000	673,200,000
				30층이상	3	255,527,000	507,473,000	763,000,000	76,300,000	686,700,000
				3층	1	255,527,000	456,473,000	712,000,000	71,200,000	640,800,000
				5~9층	1	255,527,000	485,473,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10~19층	1	255,527,000	500,473,000	756,000,000	75,600,000	680,400,000
				20~29층	2	255,527,000	508,473,000	764,000,000	76,400,000	687,600,000
084.9766C	84C	2	118~119동 4호라인	30층이상	1	255,527,000	523,473,000	779,000,000	77,900,000	701,100,000
				3층	1	250,270,000	465,730,000	716,000,000	71,600,000	644,400,000
		8	105~111동 4호라인	30층이상	1	250,270,000	533,730,000	784,000,000	78,400,000	705,600,000
				5~9층	1	250,270,000	443,730,000	694,000,000	69,400,000	624,600,000
				10~19층	1	250,270,000	458,730,000	709,000,000	70,900,000	638,100,000
				20~29층	4	250,270,000	465,730,000	716,000,000	71,600,000	644,400,000
084.2262D	84D	4	105,118동 3호라인	30층이상	2	250,270,000	480,730,000	731,000,000	73,100,000	657,900,000
				4층	1	242,249,000	457,751,000	700,000,000	70,000,000	630,000,000
				10~19층	2	242,249,000	491,751,000	734,000,000	73,400,000	660,600,000
				20~29층	1	242,249,000	498,751,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1	106동 3호라인	30층이상	1	242,249,000	483,751,000	726,000,000	72,600,000	653,400,000
		4	107~109동 3호라인	10~19층	1	242,249,000	439,751,000	682,000,000	68,200,000	613,800,000
				20~29층	1	242,249,000	446,751,000	689,000,000	68,900,000	620,100,000
				30층이상	2	242,249,000	461,751,000	704,000,000	70,400,000	633,600,000
084.2020E	84E	8	118~119동 2호라인	10~19층	3	263,657,000	461,343,000	725,000,000	72,500,000	652,500,000
				20~29층	2	263,657,000	468,343,000	732,000,000	73,200,000	658,800,000
				30층이상	3	263,657,000	483,343,000	747,000,000	74,700,000	672,300,000
		8	105~108동, 110동 2호라인	5~9층	2	263,657,000	409,343,000	673,000,000	67,300,000	605,700,000
	10~19층			2	263,657,000	424,343,000	688,000,000	68,800,000	619,200,000	
	20~29층			3	263,657,000	432,343,000	696,000,000	69,600,000	626,400,000	
	30층이상			1	263,657,000	446,343,000	710,000,000	71,000,000	639,000,000	
	084.4546F	84F	2	111,118~119동 1호라인	20~29층	1	269,809,000	487,191,000	757,000,000	75,700,000
30층이상					1	269,809,000	502,191,000	772,000,000	77,200,000	694,800,000
5			105,108동 1호라인	10~19층	1	269,809,000	443,191,000	713,000,000	71,300,000	641,700,000
				20~29층	1	269,809,000	450,191,000	720,000,000	72,000,000	648,000,000
084.7583G	84G	2	125동 3호라인	30층이상	3	269,809,000	465,191,000	735,000,000	73,500,000	661,500,000
				4층	1	245,635,000	450,365,000	696,000,000	69,600,000	626,400,000
			104동 4호라인	20~29층	1	245,635,000	468,365,000	714,000,000	71,400,000	642,6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선택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잔금납부기한(2021.06.14.) 내 완납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합 계	
일반(기관추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	-	1	-	-	-	-	-	1	
		장기복무제대군인	-	1	-	-	-	-	-	-	-	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	-	-	1
	중소기업근로자		-	-	1	-	-	-	-	-	-	1
	장애인	인천광역시	-	-	1	-	-	-	-	-	-	1
		서울특별시	-	-	-	1	-	-	-	-	-	1
		경기도	-	-	-	-	1	-	-	-	-	1
경 제 자 유 구 역		-	1	3	1	1	-	1	-	-	7	
다자녀가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50%)		-	1	2	1	1	-	1	-	6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50%)		-	-	1	-	-	-	-	-	-	1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 (75%)	-	3	5	3	2	1	3	1	-	18
		일반공급 (25%)	-	-	1	-	-	-	-	-	-	-
노 부 모 부 양			-	-	1	-	-	-	-	-	-	1
생 애 최 초			-	1	2	1	-	-	1	-	-	5
합 계			-	7	18	7	5	1	7	1	-	4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단,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일반공급 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접수 가능(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인터넷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접수일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 /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 **대상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지역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 ②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3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소만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중사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중사한 근로자를 말한다.
- 다. "약국"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약국을 말한다.
-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말한다.
-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 확정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신청자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청약통장 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유의사항**

1.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며,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가.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여부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에 의거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반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 모든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되 이 경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1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 하는 자
 -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50%),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50%)순으로 우선 공급함.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상위소득,25%)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8,905,542원 ~ 11,577,203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10,686,650원 ~ 12,467,75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주택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 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50%)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 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자격요건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이하인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 주택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50%)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50%)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 저축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 각 목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p>나. 세대주일 것 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하나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청약 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2순위로만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 분	거주구분	순 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전용 85㎡이하)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만,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 100% 적용(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 고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청약가점제 항목별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3조, [별표1] 1호

구 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수 인정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출입국사실 증명원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p>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 선정하며,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50%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하며,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 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예비입주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당사 분양사무실)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사업주체 분양사무실)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당사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

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4)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분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의2다음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아)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2.19.(금)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당사 분양사무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일반공급	1순위	2021.02.22.(월) 08: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2.23.(화)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p> <p>[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p>·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p> <p>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도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도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도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도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표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필수, 대리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 대조일은 2000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로 설정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 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비속	•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기록 대조일은 2000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로 설정 필수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약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구성원(성년인) 전원 제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사실 증명원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없음" 발급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 필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본인 또는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확인각서	배우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가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구성원(성년인) 전원 제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개년도 이전의 통산 서류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재된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 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장 - 세무서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국민연금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미가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과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필수)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내 용
청약자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필수)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미가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과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직인날인 필수)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필수)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 	

소득입증
서류목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당첨자 서류제출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3.0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3.03.(수)~2021.03.05.(금), 총 3일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빠른등기)이며, 2021.03.05.(금)까지 한함.(우편소인일자 기준)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위치)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 1, 2순위 당첨자 : 순위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은 우편 접수(빠른등기) 외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코로나19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접수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사업주체 분양사무실(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당첨자 자격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지정기간 내에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정당계약일 이후, 서류접수 및 추첨/계약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됩니다.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3.02.(화) ~ 2021.03.11.(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3.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필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필수, 대리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 대조일은 2000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로 설정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비속	•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기록 대조일은 2000년 1월 1일 이후 ~ 현재까지로 설정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표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를 참조하여 추가 제출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본인 및 세대원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함
	○	혼인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는 필히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상세 발급을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3.15.(월) ~ 2021.03.17.(수), 총 3일간	당사 분양사무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위치)	특별/일반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접수, 추첨 및 계약일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예정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자격검증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및 부적격 소명자료 일체(사전 서류접수 제출자는 제외)
	○		계약금 입금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한 입금증(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 분양사무실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한함)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도장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한함)
	○		위임장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기준이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바람(세대주, 주택소유, 분리세대 등 확인)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과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지정된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259-1276-11	아시아신탁(주)

- 계약금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2호 계약자 → '1030702홍길동')
- 분양대금의 납부기한은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잔금은 2021.06.14.(월)까지입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내에 당사 분양사무실 방문원인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분양사무실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당사에서는 별도 대출 지원 및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며, 대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대출은행과 협의하여야 함.

VI 추가선택품목 계약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선택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을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 체결 시,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 합니다.
- 금번 공급하는 117세대의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 적용사항 및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 하단에 기재된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추가선택품목은 당사 홈페이지(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및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세대 관람일(당첨자에 한함)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잔금(90%)	2021.06.14까지	잔금(90%)
74A	12,740,000	1,274,000			11,466,000
74B	13,350,000	1,335,000			12,015,000
84A	13,630,000	1,363,000			12,267,000
84B	13,440,000	1,344,000			12,096,000
84C	13,730,000	1,373,000			12,357,000
84D	10,450,000	1,045,000			9,405,000
84E	12,130,000	1,213,000			10,917,000
84F	12,760,000	1,276,000			11,484,000
84G	16,560,000	1,656,000			14,904,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농협은행	301-0259-1276-11	아시아신탁(주)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발코니 확장공사 취소 및 추가공사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주택형별 산출된 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확장비용은 발코니샷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세대 간 발코니 확장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매립 배관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지 않은 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 하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 입	선택1 (거실)	선택2 (거실+안방)	선택3 (거실+안방+침실2)	선택4 (거실+안방+침실1+침실2)	비 고
74A	2,458,000	3,572,000	4,481,000	5,417,000	삼성전자 무풍시스템에어컨 (무선리모컨 제어방식)
74B	2,077,000	3,151,000	4,427,000	5,397,000	
84A	2,242,000	3,565,000	4,837,000	5,672,000	
84B	2,058,000	3,412,000	4,601,000	5,403,000	
84C	2,068,000	3,614,000	4,790,000	5,754,000	
84D	1,795,000	3,201,000	4,510,000	5,461,000	
84E	2,325,000	3,433,000	4,690,000	5,504,000	
84F	1,793,000	3,197,000	4,523,000	5,438,000	
84G	2,137,000	3,460,000	4,519,000	5,293,000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설치 해제, 교체 및 추가계약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2) 가전 제품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모델명	제조사	공급금액	비고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RS674CHQFSR	삼성전자	4,600,000	-
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NZ63J3300CK	삼성전자	790,000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설치 해제, 교체 및 추가계약이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 미설치 세대는 냉장고장치가 설치되며, 인덕션 하이브리드쿡탑 미설치 세대는 3구 가스쿡탑이 기본제공됩니다.

(3) 바닥감재/수납공간 강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84A			84B			84C			84D	84E	84F	84G	비고
	유지	트임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유지	트임	알파룸+ 팬트리	유지	트임	팬트리+ 수납장	-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	
알파룸 벽체 / 안방수납강화 (84E만 해당)	-	-	698,000	-	-	1,675,000	-	-	2,233,000	-	769,000	-	-	-
폴리싱타일 (바닥마감재)	2,373,000	2,660,000		2,307,000	2,787,000	2,378,000	2,318,000	2,754,000	2,621,000	2,152,000	2,428,000	2,262,000	2,704,000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설치 해제, 교체 및 추가계약이 불가함.
- 바닥 폴리싱타일 시공은 주방+거실+복도+알파공간(유상옵션 선택시)에 시공됨.

(5) 주방가구 엔지니어드스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74A	74B	84A	84B	84C	84D	84E	84F	84G	비고
주방 상판	650,000	600,000	730,000	760,000	920,000	640,000	720,000	770,000	910,000	-
주방 벽체	1,140,000	1,490,000	1,630,000	1,400,000	1,600,000	1,400,000	1,310,000	1,430,000	1,490,000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 기준으로 공급되므로 설치 해제, 교체 및 추가계약이 불가함.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세대는 인조대리석이 시공되며,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미설치 세대는 타일이 시공됨.

(6)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미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선택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분양계약자가 추가 납부해야 함.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7)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안내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선택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품목	농협은행	301-0259-1276-11	아시아신탁(주)

■ 추가선택옵션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	계약시	2021.06.14.까지

Ⅶ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잔금 완납 후, 2021년 04월 05일부터 입주 가능(잔금납부기한은 2021.06.14.까지임)
- 사용승인일 : 2020년 07월 13일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계획은 지하주차대수 4,160대이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가능 제한 높이는 2.7m로 설계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위탁자 겸 시행자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 사용 승인일(2020.07.13.) 완료후, 임대 이력이 없는 공실 상태로 보유했던 주택이며, 공실 상태로 보유한 주택으로서 현재 상태에서 의 분양이므로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당첨자는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 본인이 당첨 세대 개발일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위탁자 겸 시행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수탁받아 수탁사인 아시아신탁(주)이 진행하는 부동산담보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사인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고 아시아신탁(주)는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일 기준 현재 상태로 공급하므로, 입주 후 발견되는 모든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보일러, 샷시, 도배, 마루, 단열, 도장, 싱크대, 세대열쇠, 전자제품, 배관 및 소화설비, 기타 마감재 등)의 노후화 및 작동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시공사 포스코건설(주) 또는 시행사 센토피아송도랜드마크시티지역주택조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며,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할 경우 입주일부터,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입주할 경우에는 잔금납부약정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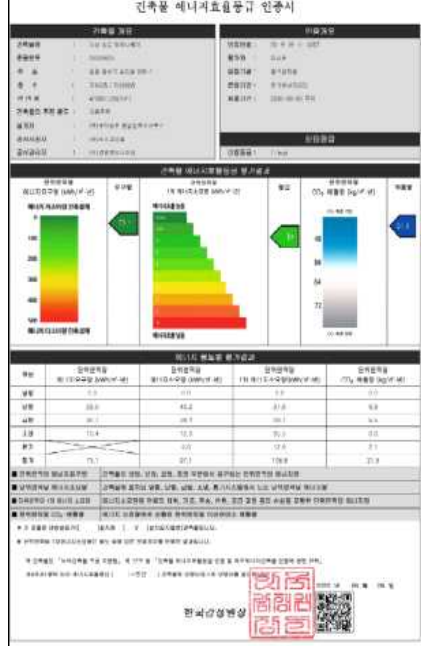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구분	평균열관류율 기준(W/m²K)		실제 적용 열관류율	판정근거
벽체 및 창호 성능	측벽적용		0.20 이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함
	외벽	직접	0.25 이하	
		간접	0.32 이하	
	창호	직접	1.20 이하	
		간접	2.10 이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p>녹색건축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인증번호: 2020-203 인증기간: 2020.06.29 - 2025.06.29</p> <p>인증 등급: ★★☆☆</p> <p>한국감정원장</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인증번호: 2020-06-29 인증기간: 2020.06.29 - 2025.06.29</p> <p>인증 등급: A</p> <p>한국감정원장</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인증번호: 2020-06-29 인증기간: 2020.06.29 - 2025.06.29</p> <p>인증 등급: A</p> <p>한국감정원장</p>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종합엔지니어링	(주)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8,897,100,900	1,413,936,000	1,173,219,300	608,780,7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자 겸 매도인)	위탁자 겸 시행자	시공사
상호명	아시아신택(주)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0-87-07104	205-82-81695	506-81-0228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엔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마래로 30, 스마트밸리E동 3층 4호 (송도동, 송도BRC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 분양사무실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8-1번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단지내 유치원 1층(106동 옆 위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더샵송도마리나베이.com>

■ 분양문의 : 032-859-0190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길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적용사항 및 비용

(단위:원 / 부가가치세포함)

동	호수	타입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냉장고	폴리싱타일	수납강화	인덕션쿠포탑	엔지니어드 스톤		총비용
									주방상판	주방벽체	
101	1101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1	1601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1	3003	74A	12,740,000	4,481,000							17,221,000
101	3103	74A	12,740,000	5,417,000							18,157,000
102	802	74B	13,350,000	5,397,000	4,600,000						23,347,000
102	1402	74B	13,350,000	3,151,000							16,501,000
102	2002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102	2702	74B	13,350,000	4,427,000							17,777,000
102	3001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102	3002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102	3502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3	2101	74B	13,350,000	5,397,000	4,600,000			790,000			24,137,000
104	903	74A	12,740,000	3,572,000							16,312,000
104	2002	74B	13,350,000	3,151,000							16,501,000
104	2004	84G	16,560,000	5,293,000	4,600,000			790,000	910,000	1,490,000	29,643,000
104	2301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4	2401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05	4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5	602	84E	12,130,000	4,690,000							16,820,000
105	702	84E	12,130,000	5,504,000			769,000				18,403,000
105	704	84C	13,730,000	5,754,000				790,000	920,000	1,600,000	22,794,000
105	10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5	24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5	2901	84F	12,760,000	3,197,000							15,957,000
105	3101	84F	12,760,000	5,438,000							18,198,000
105	3301	84F	12,760,000	4,523,000							17,283,000
105	3304	84C	13,730,000	4,790,000	4,600,000	2,621,000	2,233,000				27,974,000
105	3801	84F	12,760,000	5,438,000							18,198,000
106	15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06	30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07	1103	84D	10,450,000	3,201,000	4,600,000	2,152,000					20,403,000
107	1602	84E	12,130,000	5,504,000							17,634,000
107	1902	84E	12,130,000	5,504,000		2,428,000	769,000	790,000	720,000	1,310,000	23,651,000
107	2003	84D	10,450,000	1,795,000							12,245,000
107	2302	84E	12,130,000	5,504,000	4,600,000	2,428,000	769,000				25,431,000
107	2604	84C	13,730,000	2,068,000							15,798,000
107	2702	84E	12,130,000	4,690,000			769,000				17,589,000

108	1901	84F	12,760,000	5,438,000							18,198,000
108	22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08	3003	84D	10,450,000	1,795,000							12,245,000
108	3302	84E	12,130,000	5,504,000							17,634,000
109	3203	84D	10,450,000	5,461,000							15,911,000
110	2204	84C	13,730,000	2,068,000							15,798,000
110	2704	84C	13,730,000	3,614,000							17,344,000
110	2802	84E	12,130,000	5,504,000			769,000				18,403,000
111	3204	84C	13,730,000	4,790,000							18,520,000
112	603	84B	13,440,000	2,058,000							15,498,000
112	16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698,000	790,000	730,000	1,630,000	27,750,000
112	2804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2	3502	84B	13,440,000	2,058,000							15,498,000
113	602	84B	13,440,000	2,058,000							15,498,000
113	1501	84A	13,630,000	4,837,000			698,000				19,165,000
113	2202	84B	13,440,000	5,403,000					760,000	1,400,000	21,003,000
113	29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3	3202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14	303	84B	13,440,000	3,412,000							16,852,000
114	2304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4	2403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14	26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4	27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4	2902	84B	13,440,000	3,412,000							16,852,000
114	3201	84A	13,630,000	3,565,000				790,000			17,985,000
115	602	84B	13,440,000	4,601,000							18,041,000
115	1104	84A	13,630,000	4,837,000	4,600,000	2,373,000	698,000				26,138,000
115	13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5	17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5	22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5	2501	84A	13,630,000	5,672,000		2,373,000	698,000				22,373,000
115	29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2,373,000	698,000				26,973,000
116	404	84A	13,630,000	5,672,000							19,302,000
116	2304	84A	13,630,000	5,672,000							19,302,000
116	2602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17	5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7	804	84A	13,630,000	5,672,000							19,302,000
117	1003	84B	13,440,000	5,403,000			1,675,000				20,518,000
117	1404	84A	13,630,000	4,837,000							18,467,000
117	1604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17	22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7	2401	84A	13,630,000	5,672,000		2,373,000	698,000	790,000			23,163,000

117	2501	84A	13,630,000	5,672,000							19,302,000
117	2504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17	3103	84B	13,440,000	5,403,000	4,600,000	2,787,000					26,230,000
118	304	84C	13,730,000	4,790,000							18,520,000
118	1702	84E	12,130,000	5,504,000	4,600,000	2,428,000	769,000				25,431,000
118	1703	84D	10,450,000	5,461,000	4,600,000			790,000			21,301,000
118	1802	84E	12,130,000	2,325,000			769,000				15,224,000
118	2501	84F	12,760,000	5,438,000		2,262,000					20,460,000
118	2902	84E	12,130,000	3,433,000			769,000				16,332,000
118	3302	84E	12,130,000	5,504,000		2,428,000	769,000				20,831,000
118	3602	84E	12,130,000	2,325,000							14,455,000
119	1702	84E	12,130,000	4,690,000							16,820,000
119	2802	84E	12,130,000	2,325,000							14,455,000
119	3001	84F	12,760,000	5,438,000		2,262,000					20,460,000
119	3304	84C	13,730,000	5,754,000							19,484,000
119	3502	84E	12,130,000	5,504,000			769,000				18,403,000
120	801	84A	13,630,000	4,837,000		2,373,000	698,000	790,000			22,328,000
120	1102	84B	13,440,000	4,601,000		2,378,000	1,675,000				22,094,000
120	21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20	2103	84B	13,440,000	5,403,000	4,600,000	2,787,000					26,230,000
121	602	84B	13,440,000	3,412,000							16,852,000
121	9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698,000				24,600,000
121	2002	84B	13,440,000	5,403,000							18,843,000
121	2501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21	2701	84A	13,630,000	5,672,000			698,000	790,000	730,000	1,630,000	23,150,000
122	4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2,373,000	698,000				26,973,000
122	402	84B	13,440,000	2,058,000							15,498,000
122	2101	84A	13,630,000	5,672,000	4,600,000	2,660,000		790,000			27,352,000
123	1901	84A	13,630,000	5,672,000							19,302,000
123	2104	84A	13,630,000	2,242,000							15,872,000
123	2604	84A	13,630,000	5,672,000			698,000				20,000,000
123	3002	84B	13,440,000	3,412,000							16,852,000
125	403	84G	16,560,000	5,293,000							21,853,000
125	1201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125	1601	74B	13,350,000	5,397,000							18,747,000
125	1602	74B	13,350,000	3,151,000							16,501,000
125	2602	74B	13,350,000	2,077,000	4,600,000						20,027,000
125	2702	74B	13,350,000	2,077,000							15,427,000

금번 공고 제외된 2회차 공급 안내사항

- 2회차 모집 세대수는 조합원 자격상실세대인 189세대 중 금번 공급 세대수에서 제외된 72세대 기준으로 추후 별도 모집 공고 후 모집할 예정이며, 입주자모집승인 과정에서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2회차 공급에 대한 신청자격요건 및 청약접수방법 등은 해당 공급시기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자유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074.8994A	74A	74.8994	24.6258	99.5252	38.6444	138.1696	51.6247	1	-	-	-	-	-	-	-	1	-
	074.9894B	74B	74.9894	24.2834	99.2728	38.6908	137.9635	51.6868	7	-	-	-	1	-	-	1	6	-
	084.9738A	84A	84.9738	27.1040	112.0778	43.8422	155.9200	58.5686	16	1	1	1	3	-	1	7	9	-
	084.9160B	84B	84.9160	26.7441	111.6601	43.8124	155.4725	58.5287	22	2	2	2	4	1	1	12	10	-
	084.9766C	84C	84.9766	26.7258	111.7024	43.8436	155.5460	58.5705	13	1	1	1	2	-	-	5	8	1
	084.2262D	84D	84.2262	27.2773	111.5035	43.4564	154.9599	58.0533	6	-	-	-	1	-	-	1	5	-
	084.2020E	84E	84.2020	27.7446	111.9466	43.4440	155.3906	58.0366	2	-	-	-	-	-	-	-	2	-
	084.4546F	84F	84.4546	27.8407	112.2953	43.5743	155.8696	58.2107	3	-	-	-	-	-	-	-	3	1
	084.7583G	84G	84.7583	27.2006	111.9589	43.7310	155.6899	58.4200	2	-	-	-	-	-	-	-	2	-
합 계									72	4	4	4	11	1	2	26	46	2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공동주택(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하였으며,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상가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 금액

(단위:원/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해당동·호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074.8994A	74A	1	101,104동 3호라인	10~19층	1	224,458,000	407,542,000	632,000,000	63,200,000	568,800,000
074.9894B	74B	7	101~104동, 125동 1,2호 라인	10~19층	3	226,520,000	406,480,000	633,000,000	63,300,000	569,700,000
				20~29층	3	226,520,000	413,480,000	640,000,000	64,000,000	576,000,000
				30층 이상	1	226,520,000	426,480,000	653,000,000	65,300,000	587,700,000
084.9738A	84A	10	112~117동 1호라인	5~9층	2	261,581,000	475,419,000	737,000,000	73,700,000	663,300,000
				10~19층	2	261,581,000	490,419,000	752,000,000	75,200,000	676,800,000
				20~29층	5	261,581,000	497,419,000	759,000,000	75,900,000	683,100,000
				30층 이상	1	261,581,000	512,419,000	774,000,000	77,400,000	696,600,000
		6	112~117동, 120~123동 4호 라인	3층	1	261,581,000	461,419,000	723,000,000	72,300,000	650,700,000
				5~9층	1	261,581,000	491,419,000	753,000,000	75,300,000	677,700,000
				10~19층	2	261,581,000	505,419,000	767,000,000	76,700,000	690,300,000
084.9160B	84B	13	112~117동, 120~123동 2호라인	20~29층	2	261,581,000	513,419,000	775,000,000	77,500,000	697,500,000
				10~19층	5	255,527,000	485,473,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20~29층	3	255,527,000	492,473,000	748,000,000	74,800,000	673,200,000
				30층 이상	5	255,527,000	507,473,000	763,000,000	76,300,000	686,700,000

		9	112~117동, 120~123동 3호 라인	2층	1	255,527,000	444,473,000	700,000,000	70,000,000	630,000,000
				3층	1	255,527,000	456,473,000	712,000,000	71,200,000	640,800,000
				10~19층	4	255,527,000	500,473,000	756,000,000	75,600,000	680,400,000
				20~29층	2	255,527,000	508,473,000	764,000,000	76,400,000	687,600,000
				30층 이상	1	255,527,000	523,473,000	779,000,000	77,900,000	701,100,000
084.9766C	84C	4	118~119동 4호 라인	3층	1	250,270,000	465,730,000	716,000,000	71,600,000	644,400,000
				5~9층	1	250,270,000	495,730,000	746,000,000	74,600,000	671,400,000
				20~29층	1	250,270,000	518,730,000	769,000,000	76,900,000	692,100,000
				30층 이상	1	250,270,000	533,730,000	784,000,000	78,400,000	705,600,000
	9	105~111동 4호 라인	5~9층	2	250,270,000	443,730,000	694,000,000	69,400,000	624,600,000	
			10~19층	2	250,270,000	458,730,000	709,000,000	70,900,000	638,100,000	
			20~29층	4	250,270,000	465,730,000	716,000,000	71,600,000	644,400,000	
084.2262D	84D	5	105,118동 3호라인	3층	1	242,249,000	446,751,000	689,000,000	68,900,000	620,100,000
				20~29층	3	242,249,000	498,751,000	741,000,000	74,100,000	666,900,000
				30층 이상	1	242,249,000	513,751,000	756,000,000	75,600,000	680,400,000
		1	107~109동 3호라인	30층 이상	1	242,249,000	461,751,000	704,000,000	70,400,000	633,600,000
084.2020E	84E	1	118~119동 2호라인	5~9층	1	263,657,000	446,343,000	710,000,000	71,000,000	639,000,000
		1	105~108,110동 2호라인	30층 이상	1	263,657,000	446,343,000	710,000,000	71,000,000	639,000,000
084.4546F	84F	1	111,118~119동 1호라인	20~29층	1	269,809,000	487,191,000	757,000,000	75,700,000	681,300,000
		2	105,108동 1호라인	2층	1	269,809,000	386,191,000	656,000,000	65,600,000	590,400,000
				20~29층	1	269,809,000	450,191,000	720,000,000	72,000,000	648,000,000
084.7583G	84G	2	125동 3호라인	5~9층	1	245,635,000	468,365,000	714,000,000	71,400,000	642,600,000
				10~19층	1	245,635,000	483,365,000	729,000,000	72,900,000	656,10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과 추가선택품목이 선택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함에 따라 사용검사를 완료한 현재 상태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추가 발생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